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4
----------	----

제출년월일 : 2000. 8. 23.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가. 부동산중개업법개정(2000.1.28 공포, 2000.7.29 시행, 법률 제6236호)으로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와 과태료부과를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던 것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부과중 하나의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대상이 종전의 21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 되었으며,

나. 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서 행정처분 규칙과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규정을 법규의 효율적인 관리와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징수규칙에 통합운영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

3. 관계법령

-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